##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10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 강준현 · 윤준병 · 이병진

박정현 · 복기왕 · 민병덕

이광희 • 이재관 • 문진석

김교흥 • 전진숙 • 이인영

김현정 · 천하람 · 김주영

의원(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과 유통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 등에 대하여 발행과 관련하여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에 거래되기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유통되고 있으며, 정부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자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2항 신설).
- 다.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경우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규정은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08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를 하는경우에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통하여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있다.
  - 1. 협회
  -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
  - ③ 구체적인 장외거래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제2항제3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투자 중개 주체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       | 제4조(증권) ①          |
|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           |                    |
| 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            |                    |
| 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           |                    |
| 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                    |
| 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                    |
|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            |                    |
|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                    |
|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            |                    |
| 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                    |
|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u>다만,</u>    | <u>&lt;단서</u>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u>삭제&gt;</u>      |
| 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         |                    |
| 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          |                    |
| 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         |                    |
| 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           |                    |
| 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                    |
| <u>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u> |                    |
| 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            |                    |
| <u>다.</u>                  |                    |
| 1. 투자계약증권                  | <u>&lt;삭 제&gt;</u> |
|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         | <u>&lt;</u> 삭 제>   |
| 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                    |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 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 ⑩ (생 략)

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 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 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 다)를 하는 경우에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하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통 하여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 1. 협회
-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 개업자
- ③ 구체적인 장외거래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 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제2항제

3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 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제51조 부터 제5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 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 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투자 중개 주체에 따라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